

#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

의안 번호	111
----------	-----

제출연월일 : 2007. 3. 30.

제출자 : 대전광역시장

## 1. 제안이유

- 가.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용기금 적립조례」에서 정한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용기금의 적립 목적이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의 설립 및 운용으로
- 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용도보다 현저히 제한되어 있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 다. 관계 법령에서 정한 용도로 기금을 관리·운용하고자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을 새로이 설치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구성, 존속기한 및 용도를 정함(안 제2조 내지 제4조).
- 나.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회의 등에 대하여 정함(안 제6조 내지 제10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다. 합 의 : 예산담당관, 교통정책과, 운송주차관리과와 합의
- 라. 기 타
  - (1) 규제심사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 (2) 입법예고 : 2007. 3. 2 ~ 3. 22 / 접수의견 없음

##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3. 기금운용수익금
4. 그 밖에 수입금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2년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각 호의 용도외에 사용할 수 없다.

1. 여객자동차의 벽지노선, 그 밖에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전광역시장이 정한 노선의 운행으로 발생한 결손의 보전
2. 여객운수종사자의 양성·교육훈련, 그 밖에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자금 지원
3. 대전광역시장이 설치하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4. 여객자동차터미널시설의 정비·확충
5. 화물터미널의 건설 및 확충
6.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자금의 지원 및 시설의 확충
7. 화물자동차 공동차고지의 건설 및 확충
8. 그 밖에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 기금 중 여유기금은 「대전광역시 기금관리기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7조(구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대전광역시장이 위촉한다.

1. 대전광역시의회의원
2. 시민단체 대표
3. 운수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 ①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중교통과장이 된다.

②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관직) 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교통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 대중교통과장
3. 기금출납원 : 기금관리업무 담당사무관

②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용기금적립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폐지되는 대전광역시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용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 의무는 이 조례의 대전광역시 운수사업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④(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3조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제133조(재산 및 기금의 설치)** ①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에서 "재산"이라 함은 현금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당해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 내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제3조(기금의 존속기한)** ①법 제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조성 등에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10년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②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하여 기금의 종류별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분임기금운용관을 둘 수 있다.  
 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7조(운수종사자의 교육등)** ①운수종사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객에 대한 서비스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운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한 운수종사자를 운전 업무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을 직접 설립·운영하거나 이를 지정할 수 있으며, 운수종사자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9조(과징금처분)**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가 제76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과징금을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  
 1. 벽지노선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의 운행으로 발생한 결손의 보전  
 2. 운수종사자의 양성·교육훈련 기타 자질향상을 위한 시설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지도업무의 수행을 위한 시설의 건설 및 운영  
 3.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터미널의 건설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4. 터미널시설의 정비·확충  
 5.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의 목적을 위한 보조 또는 융자

⑤시·도지사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징금으로 징수한 금액의 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사용의 절차·대상, 운용계획의 수립·시행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6조(과징금의 용도)** ①법 제79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노선을 말한다.

1. 법 제2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의 연장 또는 변경의 명령을 받고 버스를 운행함으로써 결손이 발생한 노선
2. 법 제24조제1항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노선 등(이하 "벽지노선등"이라 한다)
3. 기타 수익성이 없는 노선중 지역주민의 교통불편과 결손액의 정도를 감안하여 시·도지사가 정한 노선

②법 제79조제4항제5호에서 "기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연구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연구기관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
2. 연합회 및 조합이 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권한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사업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징금의 세부용도 및 사용비율을 정할 수 있다.

##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9(운수종사자의 교육등)** ①운송사업자는 새로이 채용한 운수종사자(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퇴직한 후 2년 이내에 다시 채용된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20시간 이상 받게 하여야 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관계법령 및 도로교통 관계법령
2. 서비스의 자세 및 운송질서의 확립
3. 교통안전수칙
4. 응급처치의 방법
5. 기타 운전업무에 필요한 사항

②운송사업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국제행사 등에 대비하여 운송질서의 확립, 안전운행 및 서비스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수종사자에게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과징금의 부과)**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가 제17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여 사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처분이 당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다음 각호외의 용도로는 사용(보조 또는 용자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1. 화물터미널의 건설 및 확충
2. 공동차고지(사업자단체·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에게 공동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임차한 차고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 및 확충
3. 경영개선 기타 화물에 대한 정보제공사업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과징금의 용도)** 법 제19조제4항제3호에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차고지의 설치·운영사업
2. 시·도지사가 설치·운영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에 대한 비용의 보조사업

## □ 대전광역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3조(일비)** ①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석수당을, 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건 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대전광역시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8조(기금의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대전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제3조(세입) ①이 회계는 주차장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수입을 관리한다.

1. 「주차장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
2. 축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
3.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 징수한 과태료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5. ~ 9. (생략)

② (생략)

③제1항 제4호의 과징금중 「대전광역시 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 및 운영기금 적립조례」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한 금액은 적립기간 만료된 이후부터 이 회계의 수입으로 관리한다.

## □ 대전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설립및운영기금적립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의 설립 및 운영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적립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구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3. 기타운용수익금
4. 기타 수입금

**제3조(적립기간)** ①기금의 적립기간은 1990년부터 교육시설 설립운영시까지로 한다.

②기금은 운수사업체 종사원의 교육시설(이하 “교육시설”이라 한다) 완공 시까지는 교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적립하고 교육시설이 완공된 후에는 교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적립한다.

**제4조(적립의 범위)** 시장은 매년 과징금 징수액중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05조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33조 규정에 의거 승인된 벽지노선 결손보전비 및 안전시설 소요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립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대전광역시기금관리기본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 관리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로 생기는 과실은 기금에 편입한다.

**제6조(기금의 사용)** ①기금은 적립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기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9조제4항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②적립된 기금은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주체에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의2(기금관리 공무원)** ①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교통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담당사무관이 된다.

②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985, 2139, 2882, 3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3135호)**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